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8293호, 2021. 7.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표에 방재안전사무관 등의 직렬을 추가하여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및 인력의 충원(제10조, 별표3, 별표 3의2 및 별표6)

- 1)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개편하고, 에너지 전환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 2)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전 부문 전기화를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실에 전력혁신정책관 및 전력계통혁신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함.
- 3)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석탄전원에서 친환경전원으로의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신재생에너지 정책단을 폐지하고, 에너지산업실에 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재생에

너지보급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은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분장 사무를 조정함.

4) 수소경제 육성을 지원하고 수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실에 수소경제정책관 및 수소산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함.

나.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보강 및 기능 조정(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자원실장 밑에 두는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원자력 발전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전지역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함.

다. 평가대상 조직 신설(제38조의3 및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산업실 및 원전산업정책국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함.

라. 직렬의 추가(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및 별표 4의2)

1)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기상주사보, 사

회복지주사보, 감사주사보, 농업주사보, 항공주사보 및 의료기술주사보 직렬을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의 공무원 정원표에 추가함

2) 국가기술표준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방재안전사무관, 방재안전주사, 방재안전주사보, 방재안전서기, 시설서기, 환경서기, 방재안전서기보 및 환경서기보 직렬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표에 추가함.

3) 광산안전사무소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방재안전서기 직렬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표에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에너지자원실장”을 “에너지산업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혁신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에너지혁신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을 “에너지전환정책관·전력혁신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수소경제정책관으로 하며, 에너지전환정책관·전력혁신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수소경제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혁신정책관”을 “에너지전환정책관”으로, “제48호”를 “제4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원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9호부터 제81호”를 “전력혁신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8호부터 제5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전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82호부터 제95호”를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57호부터 제7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2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소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제78호부터 제9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⑳ 에너지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전기·송유관 등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5. 송유관 및 전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6. 가스안전기기·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기기의 개발 및 보급
7.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
8.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점검·평가
10.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감독
11.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운영
12.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13. 에너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1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리

제10조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에너지자원실에 에너지혁신정책과·에

너지효율과 · 전력산업과 · 전력시장과 · 분산에너지과 · 자원안보정책과 · 석유산업과 · 가스산업과 · 석탄광물산업과 · 에너지안전과 · 원전산업정책과 · 원전수출진흥과 · 원전환경”을 “에너지산업실에 에너지전환정책과 · 에너지효율과 · 에너지기술과 · 전력산업정책과 · 전력시장과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력계통혁신과 · 재생에너지정책과 · 재생에너지산업과 · 재생에너지보급과 · 수소경제정책과 · 수소산업과 · 에너지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을 “에너지전환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공정전환 정책 및 에너지 전환 지원

16.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수립 · 이행 및 탄소중립위원회 협력 제10조제8항(중전의 제7항)제19호, 제22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13호, 제14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시장과장”을 “에너지기술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에너지 · 자원 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연차별 실행 계획의 수립 · 시행
2. 에너지 · 자원 분야 기술개발종합정책의 수립 · 시행
3. 에너지 · 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 관리

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운영 및 평가
5.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총괄
6. 에너지·자원 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7. 에너지기술의 융합·복합화사업의 기획·추진
8.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9. 공기업의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권고 및 평가
10. 에너지·자원 분야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분석
11.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발간
12.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3.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1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5. 에너지·자원 분야 양자·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16. 에너지·자원 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17.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18.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지원

제1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산에너지과장”을 “전력산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송전·변전·배전시설의”를 “화력발전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중전의 제10호) 중 “송전·변전·배전시설 협력”을 “전력협력(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중전의 제11호) 중 “(화력발전소를 제외한다)”를 “(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력 정책의 총괄·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운용
5. 「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시행·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전기공사업의 육성·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13.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4.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5.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17.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전력혁신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제11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안보정책과장”을 “전력시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 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리
5. 전력시장 운영 관련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결제 및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요금·이용 조건에 관한 사
항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2항제1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산업과장”을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으로 하
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전의 제11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집단에너지”로 하며, 같
은 항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9
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산형 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
련 정책의 수립·시행
3.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4.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5. 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
6. 지역 냉난방 보급·확대 정책의 수립·시행
7.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8.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전자식 계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1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13.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4.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추진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16. 지역별 에너지계획의 관리·감독
 17. 전기차 충전기 보급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20.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홍보
 21.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22.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0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산업과장”을 “전력계통혁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의 지원
2.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및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4. 남북 간 및 국가 간 송전·변전·배전시설 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원개발사업(화력발전소를 제외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전력계통의 운영,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
7.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중화 및 광역정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

제10조제14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탄광물산업과장”을 “재생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3.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4.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운용·개선
 5.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시행
 6.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시행
 9.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운영·개편 및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10. 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 운영과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편에 관한 사항
 11. 재생에너지 규제 발굴 및 개선 정책의 수립‧시행
 12.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제10조제15항제16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7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와”를 “한국에너지공단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5호) 중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를 “재생에너지정책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안전과장”을 “재생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등 제품 표준화 및 안전성 제고 방안의 수립·시행
4.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공급망 관리 및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지원
6. 재생에너지 산업 원자재 수급 분석 및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시행
7.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고효율화를 위한 제품 인증제도 운영·관리

9. 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과 관련 산업의 육성
10.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
11. 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고용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지역연계 산업 육성전략의 수립·시행
13.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및 설치 의무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수 재생에너지원(지열, 수열, 바이오, 해양 등)의 육성·지원
15. 기타 재생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육성·지원

제10조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전산업정책과장”을 “재생에너지보급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의 수립 및 총괄 이행
2. 재생에너지 보급·용자지원 사업의 편성·운영 총괄
3.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
4.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
5.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풍력 계획 입지제도 도입 등 해상풍력 고려구역의 지정·관리
9.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운영 및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10. 태양광‧풍력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11. 태양광‧풍력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가용·소규모 태양광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4.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태양광‧풍력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7항제15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수소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전수출진흥과장”을 “수소경제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소경제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수소경제 육성·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용 및 규제 개선
3. 수소경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 점검
5. 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수립·집행
6. 수소의 생산 및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7. 해외 수소의 개발·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저탄소 수소의 판매·사용 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수소의 거래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11. 수소의 판매가격 보고·공개 및 정량검사 등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2. 수소경제 통계조사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3.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14.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수소경제 관련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6. 수소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양자·다자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수소경제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10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전환경과장”을 “수소산업과장”으로 한다.

⑲ 수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19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해외 운송을 포함한다), 충전(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 및 활용 관련 기술개발, 실증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수소 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수소 발전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8.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수소 모빌리티 활용의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수소경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3.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소경제 관련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 검사기관의 지정·운영
16.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육성
17.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
18. 기타 신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자원산업정책국에 자원안보정책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 및 석탄광물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한 협의
3. 자원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4. 석유·가스 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 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 확충 방안의 수립·시행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의 수립·시행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1.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
·유통·관리
1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결산
15. 해외 및 해양 석유 가스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6. 해저 석유 가스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7. 석유·가스 광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8. 북한과의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19.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및 이용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21.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23. 에너지 구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24.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
조에 관한 사항
25. 석유·가스 관련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26.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27. 가스하이드레이트·오일샌드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28. 그 밖에 자원산업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 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⑤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가스산업 관련 기술 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⑥ 석탄광물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광물자원(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16.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7.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18.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재정 지원
19.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20.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1.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 및 유통·관리
22.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지원
23.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4.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5.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연구
26.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7.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8. 석재·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29.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30.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
31.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4. 광산(석유·가스 광산을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5.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원전산업정책국에 원전산업정책과·원전수출진흥과·원전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
시행
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시행
3.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건설의 지원
4.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의 산정·관리·운영
7. 원자력 해체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8. 원자력 해체 기술개발·기반 조성 등 지원
 9.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
 10.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 대책의 수립·추진
 11.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
 12.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보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4.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원전산업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및 시행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6. 원자력 발전 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7. 원자력 발전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인증 및 기술개발 사업 등 지원
8.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
의 수립·추진
9.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10.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1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동향 분석 및 관련 통계
관리
12.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⑤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조사·개선
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
지원
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지정 및 관리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7. 삭제
8.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수송·인도·인수·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
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
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13.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에 관
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사후관리의 지원
 16.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8.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
도의 연구·개선
 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갈등 관리
 3.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단체
와의 협력
 4.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 기반의 구축 지원
 5.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시
행
 6.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
· 개선
8.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규정의 관
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9.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
의 점검·평가
10.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11.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13.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0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901”을 “929”로 하고, 정무직 계 “3”을 “4”로 하며, 차관
2 다음에 “본부장 1”를 신설하고, 일반직 계 “891”을 “918”로 하며, 고위
공무원단 “26”을 “29”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
4”를 “48”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
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
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
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
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69”를 “70”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55”를 “266”으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4”를 “189”로 하며, 운전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6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0”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사서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을 “2”로 하고, 운전서기보 “6”을 “7”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00”을 “928”로 하고, 정무직 계 “3”을 “4”로 하며, 차관 2 다음에 “본부장 1”를 신설하고, 일반직 계 “890”을 “917”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6”을 “29”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4”를 “48”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69”를 “7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80”을 “291”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
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
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75”를 “180”으로 하며,
운전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
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47”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6”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
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
사보 · 사서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을
“2”로 하고, 운전서기보 “6”을 “7”로 한다.

별표 4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
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
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 다음에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
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공
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0”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

는 보건연구관 40 다음에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
 2”를 신설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2 다음에 “행
 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
 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
 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 다음에 “행정서기·사서서기·
 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를 신
 설하며,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
 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 다음에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
 ·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를 신
 설하고,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
 연구관 40”를 삭제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
 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2”를 삭제하고, “행
 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
 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를 삭제하며,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
 서기 또는 전산서기 11”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
 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6”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
 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다음에 “행정서

기·공업서기·방재안전서기 및 전산서기 4”를 신설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4”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 다음에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3”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3 다음에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48”를 신설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48 다음에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 다음에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를

신설한다.

별표 4의2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3”를 삭제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48”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삭제하며,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1”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6”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4”를 신설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4”를 삭제한다.
별표 5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무역안보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역안보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술안보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력혁신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전력계통혁신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재생에너지정책관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고위공무원단 1명)	
재생에너지보급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소경제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소산업과	4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원전지역협력과	0명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의 제목 중 “(제39조제4항, 제40조제7항, 제41조제9항,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5제3항 및 제41조의6제2항 관련)”을 “(제39조제4항, 제41조제9항,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5제3항 및 제41조의6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7월 10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2. 신통상질서전략실(존속기한: 2022년 3월 31일)

총계	21
일반직 계	21
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2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업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4

· 편사연구소 · 농업연구소 · 임업연구소 · 해양수
산연구소 · 기상연구소 · 보건연구소 · 환경연구소
또는 시설연구소

3. 소재부품장비협력관(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4.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소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
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
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
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
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공
업연구소·학예연구소·편사연구소·농업연구소·임
업연구소·해양수산연구소·기상연구소·보건연구
관·환경연구소 또는 시설연구소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
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
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

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 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 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 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 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3
---	---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 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 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 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 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 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 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 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
--	---

5. 통상국내정책관(존속기한: 2021년 11월 19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6. 국내대책과(존속기한: 2021년 11월 19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7. 미래자동차산업과(존속기한: 2023년 10월 31일)

총계	2
----	---

일반직 계	2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 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 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 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 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 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 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 연구관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 <u>자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u>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 로 한다.	제10조(에너지산업실) ① 에너지 <u>산업실장</u> ----- ----- ----- -----.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 라 에너지자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에너지혁신정책관</u> · <u>자원산업정책관</u> 및 <u>원전산업</u> <u>정책관</u> 으로 하며, 에너지혁신정 책관 · 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 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	② ----- ----- ----- ----- <u>에너지전환정책관</u> · <u>전력혁신정책관</u> · <u>재생에너지정</u> <u>책관</u> 및 <u>수소경제정책관</u> 으로 하 며, <u>에너지전환정책관</u> · <u>전력혁</u> <u>신정책관</u> · <u>재생에너지정책관</u> 및 <u>수소경제정책관</u> ----- ----- -----.
③ <u>에너지혁신정책관</u> 은 「산업 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 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 을 보좌한다.	③ <u>에너지전환정책관</u> ----- ----- ----- 제4 7호----- -----.
④ <u>자원산업정책관</u> 은 「산업통 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9호부터 제81호	④ <u>전력혁신정책관</u> 은 「산업통 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8호부터 제56호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원전산업정책관은 「산업통
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82호부터 제95호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⑥ 에너지자원실에 에너지혁신
정책과 · 에너지효율과 · 전력산
업과 · 전력시장과 · 분산에너지
과 · 자원안보정책과 · 석유산업
과 · 가스산업과 · 석탄광물산업
과 · 에너지안전과 · 원전산업정
책과 · 원전수출진흥과 · 원전환
결과 및 온실가스감축팀을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
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
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
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
무관으로 보한다.

⑦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다음

-----.

⑤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
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14조제3항제57호부터
제77호-----
-----.

⑥ 수소경제정책관은 「산업통
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8호부터 제9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에너지산업실에 에너지전환
정책과 · 에너지효율과 · 에너지
기술과 · 전력산업정책과 · 전력
시장과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력계통혁신과 · 재생에너지정
책과 · 재생에너지산업과 · 재생
에너지보급과 · 수소경제정책과
· 수소산업과 · 에너지안전---

-----.

⑧ 에너지전환정책과장-----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지역별 에너지계획의 관리

· 감독

11. (생략)

13. · 14. (생략)

<신설>

<신설>

19. (생략)

22. (생략)

24. (생략)

⑧ (생략)

⑨ 전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 정책의 총괄 · 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 · 시행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11. · 12.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

15. 공정전환 정책 및 에너지 전환 지원

16.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수립 · 이행 및 탄소중립위원회 협력

13. (현행 제19호와 같음)

14. (현행 제22호와 같음)

17. (현행 제24호와 같음)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삭제>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
운용
5. 「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
련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
과의 업무 협조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 · 시행
· 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
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화력발전소 건설 · 운영의 지
원
9.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에 관한 사항
10.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
한 기술기준의 관리
11. 전기공사업의 육성 · 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
에 관한 사항
12.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13.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
력(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 정
책의 수립 · 시행
15.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6.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
에 관한 사항

17. 전원개발사업(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
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전력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⑩ 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
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
회사의 민영화·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 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리

5. 전력시장 운영 관련 전기사
업자의 요금 정산·결제 및

⑩ 에너지기술과장-----
-----.

1.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
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3.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사업비의 조성·관리

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사업별 예산의 조정·운영 및
평가

5.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u>전력과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u>	<u>총괄</u>
<u>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 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u>	<u>6. 에너지·자원 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u>
<u>7.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u>	<u>7. 에너지기술의 융합·복합화 사업의 기획·추진</u>
<u>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u>	<u>8.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성과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행</u>
<u>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u>	<u>9. 공기업의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권고 및 평가</u>
<u>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u>	<u>10. 에너지·자원 분야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분석</u>
<u>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u>	<u>11.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발간</u>
<u>12. 전기사용자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u>	<u>12.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u>
<u>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 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u>	<u>13.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u>
<u>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u>	<u>1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u>

비의 이용 요금 ·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보급
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⑪ 분산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산형 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

2. 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3.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및 보급 확대

4.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발 인프라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15. 에너지 · 자원 분야 양자 · 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16. 에너지 · 자원 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17. 에너지 · 자원 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18. 에너지 ·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 · 지원

⑪ 전력산업정책과장-----
-----.

1. 전력 정책의 총괄 · 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 · 시행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

운영 및 사업허가

5. 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

6. 지역 냉난방 보급·확대 정책의 수립·시행

7.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 협조

8.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의 지원

9.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신 설>

10. 남북 간 및 국가 간 송전·변전·배전시설 협력에 관한 사항

11. 전원개발사업(화력발전소를 제외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전력계통의 운영,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

운용

5. 「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시행·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화력발전소 -----

9.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전기공사업의 육성·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12. ----- 전력협력(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

16. -----(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 -----

<삭 제>

<u>1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중화 및 광역정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u>	<u>13.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u>
<u>14.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14.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u>
<u>15. 전자식 계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u>15.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u>
<u>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u>	<u><삭 제></u>
<u>17.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u>	<u>17.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u>
<u>18.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u>	<u>18. 그 밖에 전력혁신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u>19.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0.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추진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1.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u>	<u><삭 제></u>

22.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

⑫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한 협의

3. 자원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4. 석유·가스 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 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7.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 확충 방안의 수립·시행

<삭 제>

⑫ 전력시장과장-----
-----.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 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리

5. 전력시장 운영 관련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결제 및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u>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u>	<u>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u>
<u>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의 수립·시행</u>	<u>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u>
<u>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시행</u>	<u>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u>
<u>11.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u>	<u>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u>
<u>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u>	<u>12. 전기사용자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u>
<u>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유통·관리</u>	<u>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 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u>
<u>1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결산</u>	<u>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요금·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u>
<u>15. 해외 및 해양 석유 가스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u>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u>16. 해저 석유 가스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u>	<u><삭 제></u>

17. 석유·가스 광산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삭 제>
18. 북한과의 에너지협력에 관 한 사항	<삭 제>
19.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 사업의 진출 지원에 관한 사 항	<삭 제>
20.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 지 지원 대상 및 이용 실태 파 악에 관한 사항	<삭 제>
21.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삭 제>
22.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 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에너지 구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24.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 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삭 제>
25. 석유·가스 관련 국내 대륙 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6.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27. 가스하이드레이트·오일샌드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28. 그 밖에 자원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 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삭 제>

<삭 제>

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1. 분산형 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삭 제>

3.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4.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5. 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

6. 지역 냉난방 보급·확대 정책의 수립·시행

7.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u>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u> <u>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u> <u>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u> <u><신 설></u> <u>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u> <u>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u> <u>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u>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u> <u>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u> <u>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u>	<u>8.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9. 전자식 계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u>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u> <u>11.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u> <u>2. 집단에너지</u> ----- -- <u>1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u> <u>13.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u> <u>14.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추진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u> <u>15.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u> <u>16. 지역별 에너지계획의 관리</u>
--	---

관리

17. 석유의 정제 · 수송 · 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⑭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 · 단기 수급계획의 수립 ·

· 감독

17. 전기차 충전기 보급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신산업 육성 ·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9.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20.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홍보

21.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 · 집행

22.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⑭ 전력계통혁신과장-----
-----.

1. 송전 · 변전 · 배전시설의 건설 · 운영의 지원

2.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및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 · 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4. 남북 간 및 국가 간 송전 · 변전 · 배전시설 협력에 관한 사

<u>시행</u>	<u>항</u>
<u>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 항</u>	<u>5. 전원개발사업(화력발전소를 제외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u>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 항</u>	<u>6. 전력계통의 운영, 전기사업자 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에 관한 사항</u>
<u>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 축에 관한 사항</u>	<u>7.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 비의 안정적 운영, 지중화 및 광역정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 항</u>
<u>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 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 에 관한 사항</u>	<u>8.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u>
<u>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 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 리</u>	<u><삭 제></u>
<u>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 호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관 련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u>	<u><삭 제></u>
<u>14. 가스산업 관련 기술 도입,</u>	<u><삭 제></u>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
조에 관한 사항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⑮ 석탄광물산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
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
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
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
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
항

<삭 제>

<삭 제>

⑮ 재생에너지정책과장-----
-----.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
항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
의 총괄·조정

3.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4.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
·제도의 정비 및 운용·개선

5.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
요 확대 정책의 수립·시행

6.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
항

<u>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조</u>	<u>7.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u>
<u>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u>	<u>8.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시행</u>
<u>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u>	<u>9.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운영·개편 및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u>
<u>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개선</u>	<u>10. 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 운영과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편에 관한 사항</u>
<u>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u>11. 재생에너지 규제 발굴 및 개선 정책의 수립·시행</u>
<u>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u>	<u>12.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u>	<u>14.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u>15. 국내외 광물자원(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u>	<u>15.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u>

<u>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u>	
<u>16.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7.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u>	<u><삭 제></u>
<u>18.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재정 지원</u>	<u><삭 제></u>
<u>19.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u>	<u><삭 제></u>
<u>20.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u>	<u><삭 제></u>
<u>21.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 및 유통·관리</u>	<u><삭 제></u>
<u>22.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지원</u>	<u><삭 제></u>
<u>23.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u><삭 제></u>
<u>24.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u>	<u><삭 제></u>

<u>수립·시행</u>	
<u>25.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연구</u>	<u><삭 제></u>
<u>26.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7.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u>	<u>13. <u>한국에너지공단과</u>-----</u> <u>--</u>
<u>28. 석재·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9.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u>	<u><삭 제></u>
<u>30.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u>	<u><삭 제></u>
<u>31.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32.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u>	<u><삭 제></u>
<u>3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u>	<u><삭 제></u>
<u>34. 광산(석유·가스 광산을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u>	<u><삭 제></u>
<u>35.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u>	<u>16. ----- <u>재생에너지정책관</u></u> <u>내 -----</u>

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6> 에너지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
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

2. 가스·전기·송유관 등에 관
한 재해 대책의 수립·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
사 및 대응

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
개선

5. 송유관 및 전기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6. 가스안전기기·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
기기의 개발 및 보급

7.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
화 추진

--

⑩ 재생에너지산업과장-----
-----.

1.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
립·시행

2.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 고도
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사
업화 지원

3. 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장비 등 제품 표준화
및 안전성 제고 방안의 수립
· 시행

4.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
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 협
조에 관한 사항

5.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공급
망 관리 및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지원

6. 재생에너지 산업 원자재 수
급 분석 및 공급 안정화 정책
의 수립·시행

7.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
고효율화를 위한 제품 인증제

8. <u>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9. <u>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점검·평가</u> 10. <u>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감독</u> 11. <u>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운영</u> 12. <u>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u> 13. <u>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홍보</u> <u><신 설></u> <u><신 설></u> <17> <u>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도 운영·관리</u> 8. <u>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u>----- ----- 9. <u>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과 관련 산업의 육성</u> 10. <u>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u> 11. <u>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고용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12. <u>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지역연계 산업 육성전략의 수립·시행</u> 13. <u>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및 설치 의무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14. <u>소수 재생에너지원(지열, 수열, 바이오, 해양 등)의 육성·지원</u> 15. <u>기타 재생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육성·지원</u> ⑰ <u>재생에너지보급과장</u>----- -----.
--	--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시행
3.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건설의 지원
4.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6.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
8.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9.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 대책의 수립·추진

1.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의 수립 및 총괄 이행
2. 재생에너지 보급‧용자 지원 사업의 편성‧운영 총괄
3.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
4.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
5.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풍력 계획 입지제도 도입 등 해상풍력 고려구역의 지정·관리
9.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운영 및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u>10.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u> · <u>갈등 관리</u>	<u>10. 태양광&#8231;풍력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u>
<u>11.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 단체 · 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협력</u>	<u>11. 태양광&#8231;풍력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u>
<u>1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u>	<u>12. 자가용 · 소규모 태양광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13.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u>	<u>1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관리&#8231;감독에 관한 사항</u>
<u>14.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 기반의 구축 지원</u>	<u>14.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태양광&#8231;풍력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
<u>15.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u> · <u>보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u> · <u>시행</u>	<u><삭 제></u>
<u>16.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7.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 · 시행</u>	<u><삭 제></u>
<u>18.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u>	<u><삭 제></u>

<u>리·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u> <u>· 시행</u>	
19. <u>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u> <u>리·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u> <u>도의 연구·개선</u>	<u><삭 제></u>
20. <u>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u> <u>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u> <u>규정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u> <u>관한 사항</u>	<u><삭 제></u>
21. <u>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u> <u>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u> <u>이행 실적의 점검·평가</u>	<u><삭 제></u>
22. <u>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u> <u>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u> <u>조사</u>	<u><삭 제></u>
23. <u>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u> <u>직원 재산 등록·취업 제한</u> <u>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4. <u>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u> <u>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8> <u>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u> <u>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⑱ <u>수소경제정책과장</u> ----- -----.
1. <u>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u> <u>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u> <u>수립·시행</u>	1. <u>수소경제 육성·진흥을 위한</u> <u>정책의 수립·시행</u>
2. <u>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u>	2. <u>수소경제 육성·진흥에 관한</u>

<u>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의 발굴 및 이행 지원</u> 3. <u>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조직 의 관리</u> 4. <u>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운 영 사업의 지원</u> 5. <u>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양 자 간 국제협력</u> 6. <u>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추진</u> 7. <u>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에 필요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법령·제도의 운용 및 규제 개선</u> 3. <u>수소경제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 운영에 관한 사항</u> 4. <u>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 점검</u> 5. <u>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수립 ·집행</u> 6. <u>수소의 생산 및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u> 7. <u>해외 수소의 개발·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 항</u> 8. <u>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제도 의 운용에 관한 사항</u> 9. <u>저탄소 수소의 판매·사용 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u> 10. <u>수소의 거래 및 가격 안정화 에 관한 사항</u> 11. <u>수소의 판매가격 보고·공 개 및 정량검사 등 유통질서</u>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9>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의 수립·시행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
제도의 연구·조사·개선

확립에 관한 사항

12. 수소경제 통계조사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3.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14.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수소경제 관련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6. 수소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양자·다자간 업무협력에 관
한 사항

17. 그 밖에 수소경제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
는 사항

⑩ 수소산업과장-----
-----.

1.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
립·시행

2.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해
외 운송을 포함한다), 충전(수
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
다) 및 활용 관련 기술개발,
실증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

<u>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 지원</u> <u>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변경</u> <u>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지정 및 관리</u> <u>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u> <u>7. 원자력발전소 철거 비용의 산정·관리·운영</u> <u>8.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u> <u>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수송·인도·인수·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u> <u>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u> <u>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계획의</u>	<u>향</u> <u>3.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4. 수소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u>5. 수소 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6.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u> <u>7. 수소 발전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u> <u>8.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9. 수소 모빌리티 활용의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10.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u>11.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u>
--	--

수립·시행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13.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사후관리
의 지원

16.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8.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12. 수소경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3.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소경제 관련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 검사기관의 지정·운영

16.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

17.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

18. 기타 신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⑳ 에너지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

2. 가스·전기·송유관 등에 관
한 재해 대책의 수립·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
사 및 대응
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
시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
선
5. 송유관 및 전기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6. 가스안전기기·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
기기의 개발 및 보급
7.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
화 추진
8.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점검·평가
10.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
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감독
11.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
의 관리·운영
12.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기

<20> (생략)

<신설>

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13. 에너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1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리

㉑ (현행 제20항과 같음)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원산업정책국에 자원안보정책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 및 석탄광물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한 협의
3. 자원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4. 석유·가스 자원의 개발 관

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
행에 관한 사항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 프로그
램 운영

6.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 확충
방안의 수립·시행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
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의
수립·시행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
책의 수립·시행

11.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 관
련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

의 생산 · 유통 · 관리

1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

계의 편성 · 집행의 조정 · 결
산

15. 해외 및 해양 석유 가스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16. 해저 석유 가스 개발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17. 석유 · 가스 광산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 추진 및 관련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18. 북한과의 에너지협력에 관

한 사항

19. 해외 주요 석유 · 가스 개발

사업의 진출 지원에 관한 사
항

20.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

지 지원 대상 및 이용 실태 파
악에 관한 사항

21.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

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23. 에너지 구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24.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
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5. 석유·가스 관련 국내 대륙
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26.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27. 가스하이드레이트·오일샌
드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
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28. 그 밖에 자원산업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
는 사항

④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
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 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⑤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가스산업 관련 기술 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⑥ 석탄광물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
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
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
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
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
항
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
리공단과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
제도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
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
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

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광물자원(석유 · 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운영

16.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7.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18.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재정 지원

19.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20.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 · 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1.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

- 발통계의 생산 및 유통 · 관리
22.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 · 지원
23.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의 개
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24.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25.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
동연구
26.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
한 사항
27.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8. 석재 · 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29.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30.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
31.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신 설>

3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4. 광산(석유·가스 광산을 제
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5.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
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 원
전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전산업정책국에 원전산업
정책과·원전수출진흥과·원전
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
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
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
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
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중장
기 정책의 수립·시행
3.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
지·건설의 지원
4.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
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
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
한 기술개발·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의
산정·관리·운영
7. 원자력 해체 산업 육성 정책
의 수립·시행
8. 원자력 해체 기술개발·기반
조성 등 지원
9.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국제
협력
10.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
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 대책
의 수립·추진
11.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
12.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
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

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
· 보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14.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원전산업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
는 사항

④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
련된 규정의 관리 및 시행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
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6. 원자력 발전 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7. 원자력 발전 수출 촉진을 위
한 해외인증 및 기술개발 사
업 등 지원

8.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추진

9.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조직
의 관리

10.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인
력양성

1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동향 분석 및 관
련 통계 관리

12.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을 위
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⑤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의 수립·시행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조사 · 개선
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 지원
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 변경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 · 지정 및 관리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 · 관리 · 운용
7. 삭 제
8.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수송 · 인도 · 인수 · 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시행
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 · 시행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 운영

13.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
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
발

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사후관리
의 지원

16.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
력

18.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
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
· 갈등 관리

3.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
단체·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
관·단체와의 협력

4.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
기반의 구축 지원
5.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
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6.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
리·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7.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
리·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
도의 연구·개선
8.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
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규정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9.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
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평가
10.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
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
조사
11.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
직원 재산 등록·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
의 수립·시행

제40조(신재생에너지정책단) 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신재
생에너지정책과·재생에너지산
업과·신에너지산업과 및 에너
지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
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
관으로 보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의 수립·시행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및 홍보
3.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의 수립·시행
4. 부문별 신·재생에너지의 기
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13.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
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5.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
무 협조
 7.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
공동연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
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
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
 9.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1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
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개
발과 폐기물이용사업의 육성
· 지원
 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
 13.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정책

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
지 않는 사항

④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자금
· 보급자금 및 융자자금의 운

용

2.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

3.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영

4.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

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
업에 대한 지원·관리

6.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 육성

7. 재생에너지 설비·부품의 공
용화 지원

8.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추진
에 관한 사항

9. 태양광 및 풍력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
물인증에 관한 사항

⑤ 신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
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홍보
4.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5. 전기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6.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7.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8. 신에너지의 기술개발자금·보급자금 및 융자자금의 운용
9. 신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
10. 신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영
11. 신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
12. 신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13. 신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 육성

14. 신에너지 설비·부품의 공
용화 지원

15. 신에너지 수출산업화 추진
에 관한 사항

16. 신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에 관한 사항

⑥ 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
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3.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사업비의 조성·관리

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사업별 예산의 조정·운영 및
평가

5.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총괄

6. 에너지·자원 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7. 에너지기술의 융합·복합화
사업의 기획·추진
8.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성과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
행
9. 공기업의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권고
및 평가
10. 에너지·자원 분야 국내·
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분
석
11.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통
계의 수집·발간
12.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정
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3.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인
력 양성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1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
발 인프라 육성 정책의 수립
·시행
15. 에너지·자원 분야 양자·
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
화
16. 에너지·자원 분야 국제 공
동 기술개발 추진

<u>17.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u> <u>18.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지원</u> <u>⑦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 과 같다.</u>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901	919	+28
정무직 계	.		3	4	+1
	.		.	.	
본부장	.		<신 설>	1	+1
	.		.	.	
	.		.	.	
일반직 계	.		891	918	+27
고위공무원단	.		26	29	+3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		44	48	+4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u>69</u> .	<u>71</u> .	+2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255</u> · ·	<u>266</u> · ·	+11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 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 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 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 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 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 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 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 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 ·	<u>184</u> · ·	<u>189</u> · ·	+5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u>	<u><신 설></u>	<u>61</u>	+6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u> 또는 <u>방재안전주사보</u>	60	<삭 제>	-60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방재안전주사 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	2	+1
·	·	·	
·	·	·	
운전서기보	6	7	+1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900</u>		<u>928</u>	+28	
정	무	직 계	<u>3</u>		<u>4</u>	+1	
		•		•	•		
		•		•	•		
		<u>본부장</u>	<u><신 설></u>		<u>1</u>	+1	
		•		•	•		
		•		•	•		
일	반	직 계	<u>890</u>		<u>917</u>	+27	
		고위공무원단	<u>26</u>		<u>29</u>	+3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u>44</u>		<u>48</u>	+4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u>69</u> .	<u>71</u> .	+2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280</u> · ·	<u>291</u> · ·	+11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 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 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 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 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 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 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 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 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 ·	175	180	+5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u>	<신 설>	47	+47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u>	<u>46</u>	<u><삭 제></u>	-46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방재안전주사 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u>1</u>	<u>2</u>	+1
.	.	.	
.	.	.	
운전서기보	<u>6</u>	<u>7</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u> <u>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u> <u>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u> <u>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u> <u>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u>	<신 설>	40	+40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u> <u>·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u> <u>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u> <u>사 또는 공업연구사</u>	<신 설>	52	+52
<u>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u> <u>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u> <u>보 · 전산주사보 ·</u> <u>방송통신주사보 또는</u> <u>방재안전주사보</u>	<신 설>	2	+2

<u>행정서기 · 사서서기 · 공업서기</u> <u>·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u> <u>기 또는 방재안전서기</u>	<u><신 설></u>	<u>11</u>	+11
<u>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u> <u>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u> <u>보 · 전산서기보 또는</u> <u>방재안전서기보</u>	<u><신 설></u>	<u>6</u>	+6
<u>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u> <u>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u> <u>관 · 방송통신사무관 · 공업연구</u> <u>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u> <u>또는 보건연구관</u>	<u>40</u>	<u><삭 제></u>	-40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u> <u>·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u> <u>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u> <u>공업연구사</u>	<u>52</u>	<u><삭 제></u>	-52
<u>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u> <u>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u> <u>보 · 전산주사보 또는</u> <u>방송통신주사보</u>	<u>2</u>	<u><삭 제></u>	-2

<u>행정서기 · 사서서기 · 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u>	<u>11</u>	<u><삭 제></u>	-11
<u>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u>	<u>6</u>	<u><삭 제></u>	-6
·	·	·	
·	·	·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방재안전 서기 및 전산서기</u>	<u><신 설></u>	<u>4</u>	+4
<u>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u>	<u>4</u>	<u><삭 제></u>	-4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u>	· · <신 설>	· · 43	+43
<u>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공업연구사</u>	<신 설>	48	+48
<u>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u>	<신 설>	1	+1
<u>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u>	<신 설>	11	+11

<u>행정서기보·사서서기 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u>	<u><신 설></u>	<u>6</u>	+6
<u>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 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 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u>	<u>43</u>	<u><삭 제></u>	-43
<u>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 ·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u>	<u>48</u>	<u><삭 제></u>	-48
<u>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 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 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1</u>	<u><삭 제></u>	-1
<u>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u>	<u>11</u>	<u><삭 제></u>	-11

<u>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u> 	<u>6</u> 	<u><삭 제></u> 	-6
<u>행정서기·공업서기· 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4</u> 	+4
<u>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u> 	<u>4</u> 	<u><삭 제></u> 	-4